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2020.1.1.~2024.12.31.)이 만료됨에 따라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3)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5조
-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위탁사무

-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른 정신건강사업
- (2)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3) 정신건강증진사업
- (4) 자살예방사업
- (5)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라. 시설현황

시설명	건물면적 (㎡)	종사자	센터장	소재지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167.25	31명	김희숙	구미시 선산대로111(구미보건소 2층)

* 센터장 1, 부센터장 1, 팀장 3, 팀원 26

마.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 (5년)

※ 최초위탁 : 2000. 8.

바. 소요예산 : 금1,915백만원(국923, 도395, 시597) ※ 2024년 기준

사. 위탁조건

- (1) 2024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의한 운영기준 준수
- (2)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에 의함.
- (3) 수탁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 (4) 현재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고용된 인력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

아.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1)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 수탁기관 자격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 설치 대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3) 평가내용 :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

(4) 평가방법 :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자. 적정성 검토 : 적정 ※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차.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3. 기대효과

가. 관련분야의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나. 체계적인 정신질환관리 서비스로 중증 정신질환 환자로진행 지연 및 시설 입소율 감소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구미·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구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

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 시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2024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

나.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향후 5년간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른 비용은 총 10,166백만원으로 연평균 백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2차 연도부터 운영비 매년 인상률 3%로 반영함.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1,915	1,973	2,032	2,092	2,154	10,16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923	951	980	1,010	1,040	4,904
도비	394	407	419	431	444	2,095
시비	598	615	633	651	670	3,167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915	1,973	2,032	2,092	2,154	10,166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김민아(480-4168)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4년 기준)

사무명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용	1,915,458천원		
사업비 세부내역			
기간	항목	계 (천원)	산출기초
2024	합계	1,915,458	
	인건비 (기본)	1,220,000	(기본급) 1,000,000,000원(31명, 12개월) (퇴직적립금) 100,000,000원×1식 (4대보험부담금) 120,000,000원×1식
	인건비 (수당)	163,800	(특수근무수당) 21,000,000원×1식 (가족수당) 30,000,000원×1식 (명절수당)(기본급60%*2회) 80,000,000원×1식 (시간외근무수당) 6,000,000원×1식 (공휴일근무수당) 16,800,000원×1식 (연차수당) 10,000,000원×1식
	여비	24,000	(여비) 100,000원×20명×12월
	운영비	132,000	(운영비) 11,000,000원×12월 * 복사기, 정수기 등 임차, 사무용품구입, 비품구입, 무인경비, 근태용역, 공공요금, 차량유류비 등
	사업비	375,658	(사업비) 345,658,000원×1식 *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캠페인 운영비, 자살예방사업 운영비 등 (자살시도자 치료비, 이송비 등) 30,000,000원×1식

소 관 부 서		건강증진과
입 안 자	과 장	이 정 숙
	팀 장	배 민 정
	담 당 자	김 민 아 (480-4168)